「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의 견 서

□ 청년청장 김영경입니다.

□ 김호평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863호 「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□ 본 개정 조례안은

청년 범위의 확대, 청년정책위원회의 명칭 변경,
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자문회의의 운영,
청년정책 관련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한 교육 의무화,
청년의 부채경감에 관한 사항의 변경,
청년의 건강 보호·증진을 위한 지원,
청년지원기관의 기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,
청년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.

□ 이는, 서울시 청년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과 청년지원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「청년기본법」의 규정사항을 「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」에 반영함으로써 상위법과 조례 간 상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, 서울시 청년정책의 추진 및 운영에도 부합하므로 동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.

□ 이상으로 「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2020. 9. 3.

청 년 청 장 김 영 경